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학원 등에서의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 실시〉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2018호)

2024.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학교·학원 등에서의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 실시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3.
3. 회 부 일 : 2024.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

특히 2024년 6월, 제주도 내 고등학교 식당·여자 화장실 상습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은 피해자만 216명으로 추계되어 피해의 청소년 불법촬영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음.

따라서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학원·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교·학원 등에서의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 실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 밀집시설인 학교·학
원·교습소 등 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생략) <u><신설></u>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②(현행과 같음)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의 범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u>
③·④(생략)	<u>④·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2022년의 경우 6,865건으로 매년 5천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음. 특히 2024년 6월 제주도 내 고등학교 식당·여자 화장실 상습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은 피해자만 216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	5,925건	5,762건	5,032건	6,212건	6,865건

자료: 2022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상업건물이나 집·대중교통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49.8%), 학교·학원 및 보육시설은 22.8%로 나타났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11.3%에 해당됨.¹⁾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학원·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해 불법촬영을

1) < 아동·청소년 대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 발생 장소(오프라인) >

(단위: 건, %)

집, 주택 등	학교	상업 건물 등	야외, 거리	대중 교통	공중 화장실	학원 및 보육시설	기타	총계
32	24	34	21	32	22	21	11	197
16.3	12.2	17.3	10.6	16.2	11.2	10.6	5.6	100

자료: 202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 여성가족부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피해자 연령 >

(단위: 명, %)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미상	총계
14	1,777	5,780	1,831	919	408	65	7	5,053	15,854
0.1	11.2	36.5	11.5	5.8	2.6	0.4	0.0	31.9	100

자료: 2023 성범죄백서, 법무부

방지하기 위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²⁾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즉, 이 법의 목적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 제2조³⁾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

-
- 2) 「**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청소년유해약물**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5) (생략)
- 나. **청소년유해물건**
-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3) (생략)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년유해약물등(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폭력·학대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2조에 비추어볼 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청소년유해환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⁴⁾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등의 시설 정기 점검을 연 2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⁵⁾은 공중위생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를

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 ~ 11) (생략)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 7) (생략)

6. (생략)

7. “**청소년폭력·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설 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5)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① (생략)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부할 수 있다.

금지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학교·학원 및 교습소에서의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 근거의 마련은 학생의 안전대책, 시설·설비·교구의 점검 등을 포함하여 초·중등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⁶⁾」과 학원, 교습소에 관하여 학원설립·운영자의 책무, 교육환경 정화 등을 정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⁷⁾」 등 해당 시설을 주관하는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 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9(시설·설비·교구의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설비·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설비·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 사. (생략)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

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교육부는 2020년 9월에 발표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라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연 2회 이상 불시에 점검하여야 하는바,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정기점검하는 것은 이미 실시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그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행법은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유해 업소 등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내용을 현행법에 추가하는 것은 입법 목적 및 법 체계 구성에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동 개정내용은 해당 시설을 관장하는 개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와 법률 내용의 구성상 적절하다는 입장이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들의 일상 공간에서 불법 촬영된 영

설을 말한다.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절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절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물이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의 하나로 학교, 원, 교습소의 공간에 불법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게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현행법은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물인 약물, 물건 등의 유통, 판매, 접촉을 규제하고, 청소년의 업소 출입 등을 제한하는 행정규제 법률이므로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645